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 2814호
----------	---------

발의년월일 : 2022년 11월 18일

발 의 자 : 이재웅 의원

찬 성 자 : 옥동준, 임옥연,
임정옥, 김수진,
임준희, 윤인숙,
오해정 의원(7명)

1. 제안이유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에게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데 일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지급대상 및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 중복지원의 공제,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4조
- 「주민등록법」 제6조

-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관련부서 검토의견 : 없음.

라. 기타

1) 제정안 : 별 첨

2) 조례안 예고 : 2022. 11. 18. ~ 2022. 11. 23.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피해를 줄이고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해 지원하는 금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구민이 처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자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체류지가 양천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양천구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사용기한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양천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현물,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의 공제) 구청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별시가 재난 긴급생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
미 지급한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
료된 경우 미사용된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 ③ (생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 ~ 12. (생략)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 ~ ③ (생략)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생략)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